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략광물 지정 및 관리〉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56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략광물의 지정 및 관리(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4. 15.

다. 회 부 일 : 2026.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산업·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전략광물 지정 및 관리(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7)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u><신설></u> ○ 공급망안정위원회(§10)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위원회를 둔 <u><신설></u> <u><신설></u> <u><신설></u>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7) ④ (현행과 같음) <u>6의2.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 공급망안정위원회(§10) ① (현행과 같음) <u>5의2.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u> ○ 제13조의2(전략광물의 지정 등) -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된 원재료 중 국가의 안보·산업·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할 수 있음 (제1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 (제2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제3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 지정, 전략광물의 변경·해제 및 대응 전략 수립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4항) - 준용 및 대통령령 위임 규정(제5항·제6항) ○ 제13조의3(전략광물의 비축) -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별 비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제1항) -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을 비축할 수 있음 (제2항) - 정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전략광물을 구매·보유·관리할 수 있음 (제3항)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신설> ○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결제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 <신설>	- 대통령령 위임 규정 (제4항) ○ 제13조의4(전략광물의 비축자원의 방출) - 재정경제부장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축한 전략광물을 방출할 수 있음 (제1항) - 대통령령 위임 규정 (제2항) ○ 제13조의5(전략광물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 지원) - 정부는 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제1항) -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투자지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제2항) - 대통령령 위임 규정 (제3항) ○ 제13조의6(전략광물 정책의 범정부 연계) -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산업·재정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제1항) - 재정경제부장은 정책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음 (제2항) - 대통령령 위임 규정 (제3항) ○ 제14조(국제협력) (현행과 같음) - 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 (제6호) ○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략광물 (제3호)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려는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은 “경제안보품목등¹⁾”을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된 원재료 중 국가의 안보·산업·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비축, 방출, 해외개발 및 민간 투자 지원,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보조·융자, 조세 특례, 투자위험 보증, 손실지원, 비축계획 수립 및 전략광물개발 기금 설치 등 전략광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363호)」이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이는 전략광물에 대한 지정·관리 원칙과 함께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1)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를 의미함.

- 경제안보품목: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4호)
- 경제안보서비스: 그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5호)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경제안보품목등과 별개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우선 전략광물을 지정하는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현재 경제안보품목 리스트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으나,²⁾ 총 300여 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이를 모두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전략광물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 대응전략 수립, 비축목표 설정, 비축 및 방출,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 지원, 범정부 연계 및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전략광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구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재정경제부는 전략광물 지정이 현행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예컨대, 전략광물의 위험도 평가 등은 현행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가능하고, 전략광물 비축은 현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경제안보품목 비축·관리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현행 공급망지원법 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경제안보품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전략광물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현행 공급망안정화법 현황]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	현행법
전략광물 지정	(제13조의2) 전략광물 지정(제1항, 제2항 등 신설)	(제13조) 경제안보품목 지정
전략광물 관리	(제13조의2) 전략광물 관리-위험도 평가, 대응전략(제3항 신설)	(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 통해 수급 동향, 가격, 위험도 등 관리
전략광물 비축	(제13조의3) 재경부비축목표 설정 및 정부비축(재량조항)	(제7조, 제8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25조) 경제안보품목 비축·관리 지원
전략광물 방출	(제13조의4) 제13조3에 따른 정부비축 전략광물 방출(재량조항)	(제5장) 경제안보품목 등 관리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 근거 마련 - 수급이나 가격 불안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있는 경우 등에 긴급수급조정조치, 긴급조달과 같은 조치 시행 근거 마련 (제25조) 경제안보품목 비축·관리 지원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지원	(제13조의5) 전략광물 해외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보증 지원	(제4장) 수입국가 다변화, 생산기반 지원, 기술개발 지원, 조세지원 등 근거 마련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통한 금융·투자 등 지원 가능
정책 범정부 연계	(제13조의6) 전략광물 안정적 수급 확보 위해 외교·산업·재정 등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과 협력	(제10조) 공급망위원회 통해 범부처 정책 조율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국제협력	(제14조 제6호) 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	(제22조)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통한 금융·투자 등 지원 가능
시스템 운영	(제15조 제1항 제3호) 전략광물 관련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제3장)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의존도가 높은 물자 등 대상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므로 심의 과정에서는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현행 경제안보품목 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제도적 차별성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을 심의 과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자원 안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 심의 현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 지원, 투자 위험보증 및 손실지원,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광물개발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광물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는바,³⁾ 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략광물을 지정토록 규정한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과 체계가 상충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광물개발기금을 신설하여 전략광물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광물은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므로 현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지원하여야 함.

3) 개정안은 제2조제1호다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있음.

다. 나목에 따른 핵심광물 중 국가의 경제·산업·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광물(이하 “전략광물”이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략광물은 기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⁴⁾의 일부이며, 핵심광물은 이미 전략광물 지정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는바, 별도로 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12. (생략) ⑤ ~ ⑦ (생략)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7. ~ 1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과급 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5의2.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u>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13조의2(전략광물의 지정 등) ①</u> <u>재정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된 원재료 중 국가의 안보·산업·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의 공급망,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광물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 설>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략광물의 관리를 위하여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 장관 제1항에 따른 전략광물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광물의 변경·해제 및 제3항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과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대한 보고 및 통보와 전략광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3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수급 위험도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전략광물의 비축)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별 비축목표를 설정할 수

현행	개정안
	있다. ②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을 비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략광물의 비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전략광물을 구매·보유·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목표의 설정, 비축의 대상·규모·방식·절차 및 관리, 민간 공동비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3조의4(전략광물 비축자원의 방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한 전략광물을 방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출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3조의5(전략광물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 지원) ① 정부는 전략광물

현행	개정안
<신설>	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해외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광물 해외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투자지원, 보증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개발의 추진 및 지원의 대상·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전략광물 정책의 범정부 연계) ①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산업·재정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연계 및 협력의 범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14조(국제협력)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u>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결제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 ⑦ (생략)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략광물</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0